63. 디스플레이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푸스

성별 여성 나이 만 20세 직종 디스플레이 제조업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성별	여성	나이	만 20세	직종	디스플레이 제조업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망 ○○○은 2009년 1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CF(Color Filter) 검사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고 2013년 4월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2011년 5월부터 두통 증상보였으며, 2011년 5월 15일 어지러움 증상으로 사내 의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범혈구감소증 (pancytopenia)소견 보여 만 20세가 되던 2011년 5월 18일에 대학병원으로 의뢰되어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를 진단 받았다. 이후 치료하였으나 질환이 악화되어 2018년 9월 13일에 사망하였고 선행사인은 전신홍반루프스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사업장 근무 당시에 밝은 빛에서 수행하는 업무로인한 두통 및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망 ○○○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09년 1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년 4월까지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약 1년 6개월간(휴직기간 제외) 근무하였다. 클린룸 내에서 공정 마지막 작업 단계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검사장비는 MAC/MIC 설비를 취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MAC/MIC 검사설비의 사양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LCD사업부 철거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망 ○○○은 2009년 1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검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4월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2011년 5월부터 두통 증상을 보였으며, 2011년 5월 15일 어지러움 증상으로 사내 의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소견 보여 대학병원으로 의뢰되어 만 20세가 되던 2011년 5월 18일에 전신홍반루푸스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를 진단 받았다. 이후 2011년 10월부터 치료하였고 당시에 뺨의 발진(malar rash), 생식기 궤양(genital ulcer) 및 탈모 (alopecia) 소견 및 온 몸이 찌르는 듯한 통증 증상을 보였고, ANA 양성, Anti-dsDNA 양성 및 C3, C4 낮은 소견을 보였으며 SLICC 진단 기준을 만족하였다. 병원 외래 및 입원치료 중에도 두통, 관절통과 같은 증상이 계속되었고 2012년 4월, 2012년 10월 등 전신홍반루푸스의 격발 의심 증상이 수차례 발생하였다. 2012년 11월에는 루푸스 신염 (lupus nephritis)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6월 전신홍반루푸스의 급격한 격발로 비정형폐렴(atypical pneumonia) 발생하였고, 급성 신손상 및 폐부종이 진행되었으며, 기흥 및 종격기흥 및 성인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으로 질병이 악화되었다. 근로자는 2018년 9월 13일에 사망하였고 선행사인은 전신홍반루프스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여, 1991년생)은 만 20세가 되던 2011년 5월 전신홍반성루푸스를 진단받았고, 치료 중 2018년 9월 13일에 사망하였다. 선행사인은 전신홍반성루푸스였다. 근로자는 2009년 1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년 8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생산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글래스에 묻은 얼룩 유무를 육안 및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신홍반성루푸스의 발생과 관련 있는 요인은 결정형 실리카가 있으며,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자외선, 교대근무, 스트레스가 있다. 근로자는 결정형 실리카와 자외선 노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교대근무와 스트레스는 질병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